

## 「구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소진혁 의원

2. 찬 성 자: 김근한 의원 외 7인

### 3. 제안이유

- 2015년 「주거기본법」의 제정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 공급량 확대에서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됨에 따라,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확대,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의 통합적 추진 등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구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범위(안 제2조)
- 지원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- 주거복지사업(안 제7조)
-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11조)
- 주거복지센터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~제13조)

### 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 - 「주거기본법」
  - 「주거기본법 시행령」

## 6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발의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주거정책의 방향을 양적 확대에서 복지 향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- 또한,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범위, 주거복지사업, 주거복지 지원 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구미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